

의안번호	2216456
의 퇴 인	박홍배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6A0586

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자본금)	-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함(제1항) -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함(제2항) -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19조(보조금 등)	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부칙 제2조(설립준비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자본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조(보조금 등)	
3	부칙 제2조(설립준비)	

2. 상세 사유

가. 자본금(안 제5조)

- 현행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¹⁾ 제정안의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이 2조원으로 확대되면 정부 또는

1) 안 부칙 제3조(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공사가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.
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등기부상 자본금은 공사의 자본금으로 본다.

지방자치단체의 출자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인데,²⁾ 제정안에 따라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사업 범위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확대되어 정부 등의 신규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□ 제정안은 한국열에너지공사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 및 주주 현황을 보면, 법정 자본금은 2,000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578억 9,400만원 규모임(2025년 1/4분기 기준)

[표 1]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 및 주주 현황(2025년 1/4분기)

(단위: 백만원)

법정 자본금	200,000	
주주명	납입자본금	지분율(%)
산업통상부	20,000	34.55
한국전력공사	11,320	19.55
한국에너지공단	6,098	10.53
서울특별시	6,000	10.36
우리사주조합	2,576	4.45
기타	11,900	20.56
총계	57,894	100.00

자료: 한국지역난방공사

나. 보조금 등(안 제19조)

□ 국가가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과 비교할 때 제정안의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사업은 보다 광범위하며, 안 제13조에 따라 한국열에너지공사는 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, 기술의 연구개발

2)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32조(자본금 및 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.

및 정보의 수집, 분석,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

[표 2]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사업 범위

한국지역난방공사 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1조)	한국열에너지공사 (안 제12조 및 제13조)
○ 제4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- 1. 집단에너지의 생산·수송·분배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되는 사업 - 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- 3.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- 7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	○ 제12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- 1.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, 수송, 분배 및 공급 설비의 설치, 운영 및 관리 - 2. 재생에너지(태양광, 바이오가스, 수열에너지 등을 포함한다)를 활용한 열, 전기의 생산 및 공급 - 3. 산업 공정열, 데이터센터 배열, 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의 회수 및 자원화 사업 - 4.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력의 열에너지 변환 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 - 5. 열에너지 공급 시설의 안전 진단, 개보수 및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, 운영 - 6.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및 진단 사업 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, 교육 및 부대사업 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(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포함한다) - 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○ 제13조(조사 및 연구) 공사는 열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,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보의 수집, 분석,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.

자료: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(법률 제21438호)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제정안은 한국열에너지공사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2025년 예산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

없으며, 사업비 규모는 3조 6,164억원 수준임

[표 3]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입 및 지출 현황(고유사업, 2025년 예산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수입	구분	지출
사업수입	4,235,723	인건비	208,812
기타사업수입	90,183	경상운영비	62,109
부대수입	5,124	사업비	3,616,407
출자금	—	차입상환금	726,662
차입금	389,319	기타	468,987
기타	362,628		
수입합계	5,082,977	지출합계	5,082,977

자료: 한국지역난방공사

다. 설립준비(부칙 제2조)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 - 제정안은 설립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(부칙 제2조제2항)
- 다만,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위원회의 구성, 이 법 시행일(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) 이전까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안 제8조에 따르면,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
 - － 1. 목적
 - － 2. 명칭
 - － 3. 주된 사무소, 지사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
 - － 4.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
 - －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－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－ 7.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- － 8. 사채 발행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
-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10. 회계에 관한 사항
- 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